

처리기간

180일 이내

위로금 지급신청서(강제동원 기간 중 사망 또는 행방불명의 경우)

※ "희생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를 말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제적부 등본(유족 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별지 제5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 (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제출합 니다) 1부 3. 별지 제7호서식의 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신청자가 고령 등의 사유로 대리인 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 거자료 1부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2.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부 등본으로도 유족임을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 성 요 령]

- ①란: 등록기준지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당시의 등록기준지
를 적습니다.
- ②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국외강제동원 기간 동안 사망이나 행방불명 중 하나에
만 ‘√’표시를 하고 사망이나 행방불명된 연월일과 장소를 적습니다.
- 강제동원 일시는 희생자가 국외로 강제동원 연월일을 적습니다.
 - 강제동원 지역은 희생자의 국외 강제동원 지역을 적습니다.
- ③란: 피해증명방법은 4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에 모두
‘√’로 표시합니다. (종)에는 증거자료의 종류가 몇 개인지를 적습니다
(예: 일본국 발행 확인서만 있는 경우 “1종”으로 적습니다).
- ④란: 유족현황은 아래와 같은 순위로 적습니다.
1.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생존해 있는 배우자 및 자녀들을 적습니다.
 2. 1의 해당자가 없으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생존해 있는 부모를 적습니다.
 3. 1, 2의 해당자가 없으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생존해 있는 손자·손녀를 적습
니다.
 4. 1, 2, 3의 해당자가 없으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생존해 있는 형제자매를 적
습니다.
- ⑤란: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유족대표를 선정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같은 순위자 간에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⑤란에 적지 않고, 별지 제6호서식
의 다수 신청인 서명서에 적어 첨부합니다.
- ⑦란: 신청자가 고령 등의 사유로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위
로금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의 성명을 적습니다.